

대구광역시달서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 (안)

의안 번호	95-37
----------	-------

제출년월일 : 95. 7.

제 출 자 : 달서구청장

(보건소)

1. 제안이유

- 보건 및 복지행정조직의 기능과 인력을 합리적으로 조정·통합하여 복지투자의 효율을 제고하고 전문적이며 포괄적인 보건 복지서비스 제공을 하기 위함.

2. 관련근거

- 사회 65000-504('95. 3. 29)
시범보건복지사무소 조직 및 인력배치 지침 시달

3. 주요골자

- “복지관련업무” 규정

4. 개정조례 (안) : 따로붙임.

5. 신·구조문 대비표 : 따로붙임.

대구광역시달서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 (안)

대구광역시달서구보건소설치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기하기 위하여 보건·복지와 관련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	행	개	정	안
제3조(업무)	보건소는 보건소법 제4조에 규정된 업무를 관장한다.	제3조(업무) 다만,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기하기 위하여 보건·복지와 관련된 사업을 실 시할 수 있다.
	<신설>			

대구광역시달서구보건소설치조례

[제정 1988· 5· 13 조례 제 71호]

개정 1989· 7· 5 조례 제141호

1992· 11· 26 조례 제244호

1993· 3· 12 조례 제251호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보건소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보건소(이하 "보건소"라 한다)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위치) 보건소는 대구광역시 달서구 월성동 281번지에 둔다.

제3조(업무) 보건소는 보건소법 제4조에 규정된 업무를 관장한다.

제4조(소장) ① 보건소에 소장을 두며, 소장은 지방의무서기관 또는 지방보건서기관으로 보한다.

② 보건소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소무를 정리하며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.

제5조(공무원) 보건소에 소장외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며, 그 직급과 정원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.

제6조(규칙)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88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.

부 칙(개정 1989. 7. 5. 조례 제141호)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89년 6월 30일부터 적용한다.

부 칙(개정 1992. 11. 26. 조례 제244호)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2년 8월 24일부터 적용한다.

부 칙(개정 1993. 3. 12. 조례 제251호)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2년 12월 26일부터 적용한다.